

협회 홈페이지 보완계획

협회는 1999년 7월 1일 협회소개, 협회가하는일, 회원소개 및 RI이용자를 위한 구인·구직 알선코너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00.12.16일(토) 현재까지 61,517명의 회원님이 협회 홈페이지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뉴로는 회원님들의 질문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코너인 자유게시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협회는 회원님의 호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동위원소회보 및 리뉴스레터와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동위원소만남책자 및 동위원소 통계현황등 간행물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작업 일정은 2000.12.15일부터 2001년 2월 15일 이전까지 2개월간에 걸쳐 새단장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부 지침(RI등의 수입요건확인업무 관련 지침) 안내

과학기술부는 2000년 12월 7일, RI등의 수입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우리 협회에 통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법에 의한 RI판매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RI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허가(신고)기관과 관련

판매행위 판단기준 및 수입요건확인 업무처리지침

1. 판매행위 판단기준

- 가. 원자력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RI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자는 원자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의 판매허가를 득하여야 함.
- 나. 무역대리업자가 외국제작사를 대신하여 사용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오퍼발행, 통관지원, 운송, 설치, 유지보수, 입찰참가 등 판매행위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역대리업자는 외국제작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판매허가를 득하여야 함.(대리점이 판매허가를 득하는 경우 외국제작사는 원자력법에 의거한 국내 판매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함)
- 다. 상기 무역대리업자가 장비설치등 RI등의 취급과 관련한 용역을 기존 허가기관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점으로서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판매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 라. 다만, 사용기관이 외국제작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고, 무역대리업자는 사용기관의 단순 수입대행만을 하며, 판매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음.

2. 수입요건확인 업무 지침

- 상기 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판매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역대리업자가 RI등을 수입대행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이 불가함. (2001. 1. 1일부터 시행)
- 수입요건확인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허가(신고)심사 결과를 참고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팀(담당자 : 최윤석 02-3411-6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방사선피폭자, 방사선보건연구센터에서의 의료처리

한국전력공사 방사선보건연구센터(센터장 김종순 박사)는 지난 11월 22일 울산에서 방사선 투과검사시 탈락된 방사선원을 분리하다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이하 "피폭자"라 함)를 치료중에 있다.

방사선보건연구센터는 과기부틀 통해 연락을 받고, 당 센터의 구급차로, 환자를 서울 쌍문동에 위치한 방사선보건연구센터로 후송하였다 (11월 22일, 17:20).

방사선보건연구센터에서는 피폭자의 일반적 의학적 검진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신체 외부에 대한 방사성오염을 제거하였고, 이어 전신계측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체내 오염여부 및 오염 핵종을 분석하여 방사선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핵의학 장비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물질의 체내 거동을 추적하여 대장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고, 곧바로 약물과 관장 등을 통해 체외로 강제 배설을 유도하여 피폭된 지 하루 만인 11월 23일 02:00경에 방사성물질을 피폭자의 체외로 완전 배설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피폭자는 방사선보건연구센터 전원의 주의 관찰하에 2시간 간격으로 혈액과 뇨, 배설물을 채취하여 방사성물질의 체내 거동을 살피는 한편 체내 방사선 피폭량을 평가하였다. 피폭자가 피폭된 방사선원은 Ir-192로 피폭당시 22Ci의 방사능을 띄고 있었으며, 에너지는 비교적 낮은 300keV이며, 반감기는 73.83일이며 주로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체내 결정장기가 없고 금속성 물질이다.

피폭자의 체내 피폭선량평가를 위해 앞서 언급한 전신계측기 및 핵의학영상장비(γ -spect), 염색체 이상분석, 림프구 변이 분석, 미소핵분석 등의 여러 각도에서 생물학적인 선량을 평가하였다. 자세한 선량평가 결과는 종합조치 결과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피폭자는 12/12일 퇴원하여, 방사선보건연구센터의 외래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신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신문속의 RI뉴스

선진국 핵폐기물 처리 해외르포 / 일본-프랑스-스웨덴 성공사례

세계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미래의 에너지 전쟁 발발 위험성을 예고한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움직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90년 대비 52%)등으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대두된다. 이러한 시점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각자 나름대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은 2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한 이후, 저비용 고효율 저공해 연료인 원자력을 실질적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원자력정책을 과감히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과